

한양대학교 ERICA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ERICA (이하 "본교" 라 한다)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득한 마일리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본교의 "장학금 지급 규정"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.

제3조(장학 수혜대상)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 제한한다.

제4조(장학금 지급 기준, 금액 및 방법) ① 별도 환산 기준 없이 누적 마일리지가 5,000 마일리지 이상일 시 신청이 가능하다.

② 지급 시 5,000 마일리지가 차감되며 일괄 100,000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본교 교육혁신처 교육성과관리팀이 별도로 정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.

④ 학생들에게 고지서 감면 형식이 아닌 직접 지급 형식 (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) 으로 지급한다.

⑤ 등록금 범위와 상관없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허용하며 학기별로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⑥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기 별도로 정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해야한다.

1. 재학 잔여 학기가 적은 자
2. 먼저 신청을 한 자
3. 신청 포인트가 많은 자

⑦ 차감되는 마일리지는 학적에 연동되지 않으며, 본교 학부 재학기간 중 적립된 마일리지를 본교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대학원 진학 이후 신청할 수 없다.

제5조(장학 신청대상)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 제한한다.

1. 징계 중인 자
2. 해당 학기 비 이수자 (휴학자, 제적자, 선택형 4+1 대상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)
3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

제6조(장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)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취득하여 장학금을 수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

장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.

제7조(보칙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(2023. 09. 01 제정)

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